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85
----------	-------

발의연월일 : 2026. 1. 7.

발 의 자 : 임종득 · 김예지 · 김상훈
서천호 · 박성훈 · 강대식
추경호 · 김기현 · 임이자
김미애 · 최형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와 산업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학업기간 장기화와 사회진출 지연 등 사회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

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2 중 “34세”를 “39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4세”를 “39세”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평가, 우대조치 및 제30조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5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u>34세</u>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6. (생 략)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u>34세</u>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 ----- ----- <u>39세</u> -----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 ----- <u>39세</u> ----- ----- ----- -----. ② (현행과 같음) <u>제30조의2(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중</u>

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중
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과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
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를 위
하여 필요한 자금

2.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자금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3년
마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
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지원, 평가, 우대조
치 및 제30조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